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나.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다.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

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 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임신 유지·중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나. 예산조치 : 중앙지원기관 운영비 1,454백만원, 임신·출산 상담창구 105

개소(가임여성인구 4만명당 1개소) 운영 및 인건비 등 2,914백만원

다. 합 의 : 법무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10. 7.

3) 규제심사 : 2020.10월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을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모성의”를 “모성과 국민의”로, “말한다.”를 “말한다(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이하 “운영기준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7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 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 제15

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중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0. 제7조의2에 따라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

1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

12.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2항 중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자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2항 및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6호”를 “제1항 및 제3항제6호”로 한다.

-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 <u>인공임신중절수술</u>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u>배출시키는 수술</u> 을 말한다.	7. “ <u>인공임신중절</u> ”이란 약물이 <u>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u> <u>로</u> ----- ----- <u>배출시켜 임신</u> <u>중절하는 행위를</u> -----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u>모성의</u>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 ----- ----- ----- <u>모성과 국민의</u> -- ----- ----- ----- ----- <u>말한다(법 제7조의</u> <u>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u> <u>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u> <u>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u> <u>상담사업을 포함한다).</u>
9. 삭 제	

10. ~ 12. (생략)

<신설>

<신설>

10.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
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
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
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
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

<신 설>

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이하 “운영기준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제7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고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신 설>

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또는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② (생략)
<신설>

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죄 또
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
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7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
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
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
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
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
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
련된 사업

<삭 제>

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
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
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
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
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
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
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
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
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
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
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
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
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
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
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
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
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
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결정서

④ 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거부·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7조의2에 따라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

<신 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경비

12.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

② -----

---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

·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6조(벌칙) ① -----

-----.

<신 설>

1. (생 략)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7조(과태료) <신 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 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

1.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
를 발급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 본
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
면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

-----.

1. 제2항 및 제3항제1호-----

-----.

2. 제1항 및 제3항제6호-----

한다. <u>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u> <u>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u> <u>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u> <u>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u> <u>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u> <u>별하지 아니한다.</u>	--. <u><삭 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9